

2024. 2. 15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 | 주용학 | 2133-3120 |
| 공공사업감시팀장 | 오승민 | 2133-3149 |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 : 5매

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, 시민참여옴부즈만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

- 14일(수) 오후 3시, 시청 다목적홀에서 워크숍 진행...시민 입장에서 시정 감시·평가 방향 제시
- 공공사업 감시 절차·감시 활동 시 주요 착안 사항·감시 지적 사례 등 교육, 2023년 사례발표 진행
- 2024년 환경·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사업 감시·평가 대상 사업 선정,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

-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(위원장 주용학)는 14일(수) 오후 3시,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‘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’을 개최했다.
 - 시민참여옴부즈만은 10개 분야(복지정책·보건의료·도시안전·주택정책·산업경제·기후환경·도시교통·도시계획·문화관광·행정자치) 1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년간 시정감시, 시민 감사, 정책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.
-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,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2024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및 공공사업 감시·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다.

- 워크숍에서는 위원들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, 시민의 실질적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‘공공사업의 효율적 감시기법’이라는 주제로 이동은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교육이 진행됐다.
 - 교육은 공공사업 감시 절차와 감시 활동 시 주요 착안 사항, 감시 지적 사례 소개 등으로 진행됐으며, 2023년에 직접 공공사업 감시·참관 활동에 참여한 노석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.

- 또한,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·평가할 에너지, 환경, 교육, 경제,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사업을 선정하고, 효과적인 공공사업 감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.
 - 선정된 감시·평가 대상 사업은 2024년 공공사업 감시·평가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.

- 주용학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“시민참여옴부즈만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건강한 서울시정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”라며, “서울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지속적인 소통·협력 등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개요 1부.
2. 시민참여옴부즈만 간담회 사진 1부. 끝.

□ **운영인원 : 10개 분야 100명**

- 분야 및 인원 : 6개 분야 35명 → 10개 분야 100명 으로 확대 ※ '22.12.30 조례 개정
 - 종전 : 6개 분야(여성복지, 도시안전, 산업경제생활환경, 도시교통도시계획, 교육문화, 일반행정)
 - 변경 : 10개 분야(복지정책, 보건의료(신설), 도시안전, 주택정책(신설), 산업경제, 기후환경(분리), 도시교통, 도시계획(분리), 문화관광, 행정자치(명칭 변경)

시민참여옴부즈만 역할

- ◆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시책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참관, 현장확인 등 시정감시
- ◆ 계약이행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시정 지킴이 역할 수행
- ◆ 시민(주민·직권)감사, 고충 민원 조사 분야별 자문
- ◆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, 정책제언 등 의견 제시

□ **임기 및 근무형태 : 임기 2년(1회 연임 가능), 비상근 명예직**

□ **자격요건**

- 기술사(건축사 포함), 노무사, 법무사, 변호사, 사회복지사(1급), 세무사,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
-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·토목, 보건·산업안전, 정보기술, 법학·행정·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 재직 경력이 있는 자
-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·조사·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


위원장 인사말씀



공공사업 감시평가대상 선정



감시평가 활동 및 참관활동 사례 교육 및 공유